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324
-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29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5월 19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5월 26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1.6.29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)

가. 제안이유

- 포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일부 카파라치의 무분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로 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, 신고관련 행정처분 및 소송시 신고 증빙자료 제출의 비협조, 증인 채택시 비협조 등으로 행정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실질적 확정력 확보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“행정처분시 지급”에서 “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,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인한 후” 지급으로 개선함.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안석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'행정처분시'에서 '행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,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'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조)

나. 검토의견

- 현재 서울시에서는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¹⁾,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음

■ 행정처분 및 소송진행 현황

구 분	행정처분	행정소송	행정심판	비 고
합 계	174	56	6	
2009년	110	51	-	
2010년	31	4	2	
2011.5월 현재	33	1	4	

- 2009년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174건 중 35.6%인 62건이 종결 처리되지 않고, 이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등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음

- 이와 같이 행정처분 이후 위반행위자가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원활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증인출석, 증거자료 제출 등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,

신고자들이 신고포상금만 수령하고 행정처분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집행기관이 소송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²⁾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기타 신고포상금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³⁾으로 지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,

1)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

2)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'2010누5709', 사건명 '과징금 부과처분 취소', 신고자에 대해 증인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출석 거부

3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(20~1,000만원) 평균 지급금액 : 97만원/건 (2008~현재),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5만원,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5~200만원 등

동 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‘행정처분 시’에서 ‘행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,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’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직업적 신고자들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줄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도과하거나,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

1. 무면허 개인택시 : 법 제4조 위반
2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: 법 제12조 위반
3.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: 법 제12조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위반
4. 개인택시 불법양도·양수 : 법 제14조 위반
5.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: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
6. 개인택시 3부제 위반 :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
7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: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
8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이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<u>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,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자로 한다.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1. ~ 8. (생략)</p>	<p>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<u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도과하거나,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</u>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<u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.</u></p> <p>단서조항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<u>시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단서조항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